

세계각국 商標登錄 요건(1)

목 차

1. 오스트렐리아
2. 프랑스
3. 독 일
4. 영 국
5. 베네룩스(벨지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 미 국
7. 캐나다
8. 소 련
9. 폴란드
10. 헝가리
11. 베트남
12. 일 본
13. 중 국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1. 오스트렐리아

오스트렐리아 상표법은 제6조에 표장에 관한 일반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표장이란 도형,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명칭, 서명, 단어, 문자 혹은 숫자 또는 이들의 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것은 물품을 위한 물건 또는 용기의 형상(예로, 병의 형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상표라 함은 제 X I 장(증명상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와 해당상품 또는 해당 서비스와의 사이에 상거래상의 관련성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혹은 나타내기 위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표장 및, 제 X I 장에 관해서는 등록원부 C부에 등록할 수

있거나 등록된 표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상표등록원부는 A, B, C, D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C와 D부분은 전문적인 것으로 출원인은 이에 관해서 X I장과 X II장을 참고해야 한다.

상표법 제24조는 등록원부 A부에 상표등록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는;

- (1) 특별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된 사람의 명칭;
- (2) 출원인 또는 영업상 전임자의 서명;
- (3) 창안된 단어;
- (4) 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혹은 품질을 직접 표시하지 않는 단어 및 그 통상의 의미에 비추어 지리적 명칭 혹은 성이 아닌 단어; 또는

(5) 기타 현저한 표장을 포함하거나 이들로 구성된 때는 등록원부의 A부에 이를 등록할 수가 있으며,

명칭, 서명 또는 단어(전항 (1) (2) (3) 또는 (4)항에서 말하는 명칭, 서명 또는 단어가 아닌것)는 이것이 현저한 것임을 증거에 의해 명백해지지 않는한 등록원부의 A부에 이것을 등록할 수가 없다.

제26조는 현저성이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상표가 현저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1) 당해 상표가 본래 식별하는데 적합한지; 그리고

(2) 당해상표의 사용 또는 기타 상황 때문에 당해상표가 식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부등록사유로는 "Patent", "Patented", "Registered", "Registered Design", "Copyright", "The counterfeit this is a forgery" 등의 단

어, 왕실문장이나 또는 모방한 것들, 오인 혹은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표, 법률이나 도덕에 반하는 것, 단순한 묘사적 단어나 표장.

제36조는 연합상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가 등록되었거나 등록출원중이고 또 동일 상품이나 동종상품에 관하여 동일소유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출원중인 또하나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소유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경우에는 연합상표로서 등록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 제39조에 의한 일련의 상표로서 등록된 것은 연합상표로 간주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7년간이며,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갱신출원함으로써 14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 소멸요건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품에 선의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등록되었고, 상표권자에 의한 말소 신청 전 1개월까지 계속 상품에 선의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3년이상 선의로 사용할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제82조에 의한 상표권의 양도 및 이전은 영업과(부분적 또는 전체적) 함께 또는 별도로 이전 가능하며, 양수인은 6개월 이내에 상표의 이전에 관한 양도광고의 증명을 특허청에 제출하고 등록해야만 한다.

2 프랑스

프랑스 상표 및 서비스마크법은 어느 기업의 제품, 물건 또는 업무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성명, 펜네임, 지리적 명칭, 임의 또는 상상의 명칭, 제품 또는 그외관의 특수한 형상, 라벨, 포장, 기장, 각인, 인장, 봉인, 장식모양, 색채의 조합 또는 배합, 도형, 부조, 문자, 숫자, 표어 및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표장은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상표제도는 선출원주의로서 단순한 사용은 더 이상 상표권리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파리조약 제6조에 해당하는 주지저명상표 소유자는 그의 상표와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등록의 경우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선출원 등록표제가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상표의 부등록 요건으로서는;

- (1) 공공의 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표장;
- (2) 파리조약 제6조에 위반된 표식;
- (3)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단순한 보통명칭;
- (4) 공공의 질서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장;
- (5)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표시로만 된 표장은 법 제3조에 의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되어야만 효과가 발생하며, 현재의 상표법은 지역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법 제13조).

상표의 소유자가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11조에 의해 그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다수출원인 경우에 1개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는다.

상표권의 이전은 영업권의 이전과 함께 또는 별도로 이전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한 영업권 이전 계약과 양수인이 서명한 위임장으로서 특허청에 등록 되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 상표제도의 특기사항은 다수출원등록의 경우 어느 1개류에의 상표사용 만으로 타류의 권리보호와 지리적 명칭, 특징적인 모양이나 식별력이 있는 외관의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고, 특별요청에 의해서 특허청은 상표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특 일

상표법 제1조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표창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누구나 출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상표의 부등록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보통명칭(Generic Name) ;

(2) 식별력이 없거나 상품의 종류, 생산시기, 산지, 특성, 용도, 가격, 수량 또는 무게에 해당하는 표시를 포함하는 숫자, 문자, 단어만으로 구성된 경우 ;

(3) 문장, 기장 또는 그 나라의 지방, 지역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

(4) 관보에 공고된 공지문에 의하여 특정상품에 관하여 자국내에 또는 외국에 소개된 발명표시 ;

(5) 타인을 모욕하기 쉬운 표현이나 사실에 분명히 합치되지 않거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

(6) 자국내에서 이미 타인에 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관련 거래계에 일반적으로 인식된 경우 ;

(7) 보호식물변종의 등록부 또는 연방청의 식물변종의 품종목록에 출원되어 등록된 제3자의 식물변종의 이름과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상 식별시킬 수 있는 표식으로 인정되는 경우, (3), (4)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표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락 받은 경우, (6)항에 있어서 출원인이 당해 타인으로 부터 출원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부등록요건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록된 상표는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로부

터 10년 동안 보존되며, 10년간씩 갱신가능하다. 갱신등록은 기간만료 1년전부터 기간만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수수료 납부로서 유효하며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 수수료 미납부시 상표는 말소된다.

상표권 소멸요건으로 경신기간 경과(제9조), 상표권 이전(제 8조), 상표취소청구(제 11조)를 들수 있는데, 상표취소청구는 선출원을 이유로 당해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그의 명의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을 경우, 당해 상표와 관련된 당업이 상표소유권자에 의해서 더이상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당해 상표의 구성요소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음을 입증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표소유권자가 당해 취소 청구전 5년 이내에 당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자는 상표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의 이전에 관해서는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등록출원 또는 그 등록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당해 상표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함께라야만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권리의 이전을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권리의 승계자는 당해 상표등록으로 부터 파생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단체표장 등록출원 또는 그의 등록으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법제 20조). <계속> <白仁洪記>

시간안내

소련 총람

북방권연구회 편

규격:A5신·318면 가격:5,000원

판매: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전화 (02) 551-5571~2)

新商標法解説

江口俊夫 著 규격:A5신·352면

鄭完燮 譯 가격:10,000원